

[서식 예] 보정서(초과압류에 대한)

보 정 서

사 건 2000타채0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

채 권 자 ㅇㅇㅇ

채 무 자 주식회사◇◇

제3채무자 ◈◈기계공업주식회사 외2

채권자는 위 사건의 초과압류 여부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.

다 음

1. 초과압류여부에 대하여

- 가.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각각 청구금액 전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였으나 채무자 가 제3채무자들로부터 가지는 채권이 불특정하며 이미 제3채무자들이 자신 들은 채무자에게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,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나더라도 피압류채권이 반드시 전액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초과압류라고 할 수 없습니다.
- 나. 채권자는 제3채무자 ◎◎주식회사에 대하여도 이미 20○○. ○. ○. ○○지 방법원 ○○지원 20○○타채○○○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바 있으나, 위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다고 계속 주장하는 바람에 채권자는 우선 다른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경합하여 새로이 동시에 압류하고자 위의 먼저 사건을 취하·해제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정본을 회수하여 수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입니다.
- 다.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피압류채권액의 범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여 피압류 채권이 있다고 단정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초과압류를 이유로 제3채 무자별로 안분한다면 나중에 새로 다시 같은 신청을 하여야 하고 편법으로



제3채무자 각자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도록 하는데 불과합니다.

- 라. 따라서 초과압류가 확실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안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이에 보정합니다.
- 2. 위 사건의 신청 당시 제출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법인등기부등본 1통을 제출합니다.

첨부: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통

20 ○ ○ . ○ . ○ . 의 채권자 ○ ○ ○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귀중